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제 정 2015. 3.
개 정 2015. 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대학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이하 “학과 개편”이라 한다)이란 학과 신설, 통합, 분리, 변경, 모집 중지, 폐지를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 개편 : 학과의 정원조정, 신설, 통합, 모집중단, 폐지, 변경 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원 조정 :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증원 또는 감원을 말한다.
3. 학과 신설 : 기존에 없던 교육편제단위가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과 통합 : 기존 2개 이상의 교육편제단위를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5. 학과 분리 : 기존 1개의 교육편제단위로부터 2개 이상의 교육편제단위로 나뉘지는 것을 말한다.
6. 학과 변경 : 교육편제단위의 명칭변경(학과명 변경, 소속단과대학 변경 등)을 말한다.
8. 모집 중지 : 학칙 【별표 1】, 【별표 3】에서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것을 말하며, ‘학과 폐지’ 전 단계이다.
9. 학과 폐지 : 모집 중단 후 학생정원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칙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별표 1】, 【별표 3】의 모집단위에 적용한다.

제4조 (학과개편의 원칙) 학과개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2. 본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정책 수행
3. 정부의 대학평가(정부재정지원사업 등) 반영
4.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

제5조 (학과개편 담당조직 및 절차) ①학과개편은 기획팀에서 관장한다.

②학과개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개편 대상 선정 및 계획(안) 수립
2. 대상 학부(과) 및 단과대학의 의견서 제출, 의견서에는 대상 학부(과) 교수 및 학생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교무위원회(대학원위원회) 심의
4. 대학평의원회 심의(단, 대학원은 예외)
5. 총장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
6. 결과 통보 및 관련 부서 후속 조치 수행

제6조 (학과개편 기준) ①학부(과) 신설은 학생모집과 취업에 경쟁력이 있는 전략육성 분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신설한다.

②대학의 학과 통합, 모집 중지, 폐지, 변경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졸업년도 졸업생의 취업률이 2년 연속 또는 4회 이상 학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재학생총원율이 학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단, 신설학과 경우는 예외)
3. 학부(과) 평가 결과 2년 연속 또는 4회 이상 하위 30%에 속하는 경우
4. 신입생 등록률이 학부(과) 정원의 80%이하로 2년 연속 유지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학특성화 등 본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학부(과)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학과개편에 따른 교원 및 학생의 지원) ①학과개편에 따라 모집 중지 및 학과 폐지가 된 학과의 교원은 전공에 대한 재교육 실시 후 다른 학과로 소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학교에서는 전항에 소속된 교수의 재교육을 지원하기위해 연구년제와 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원의 신청에 따라 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명예퇴직은 「대학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한다.

④모집 중지 및 폐지가 결정된 학생은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졸업 시까지 기존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⑤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교원양성학과), 제2호(의료인)에 해당하는 학과를 제외한 모집단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한다.

제8조 (모집 중지 및 학과 폐지의 존치) ①모집 중지 및 학과 폐지가 결정된 학과는 학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학과와 해당 교육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재적학생수가 “0”이 될 때까지 학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